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상담 사례집



☑ 본 사례집은 2025년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사업 도입 이후 축적된 실제 상담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① 시민들에게 마을행정사 제도의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② 마을행정사·담당 공무원에게는 상담 표준과 참고 사례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마을행정사 상담은 「행정사법」 제2조의 업무 범위 내 무료 상담이며, 타 자격사의 전속 업무는 해당 전문자격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안내합니다.

☑ 본 사례집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 분야별정보 > 행정·세무·법무 > 일반행정 > 마을행정사 > 마을행정사 소개

☑ 문의처

☞ 마을행정사 제도 관련: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과 (032-440-2494)

☞ 마을행정사 상담신청

— 인천지방행정사회: (연락처) 032-865-3449

(홈페이지) <http://www.인천지방행정사회.kr>

— 군구별 마을행정사: III. 군구별 마을행정사 안내 참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 분야별정보 > 행정·세무·법무 > 일반행정 > 마을행정사 > 마을행정사 찾기

☞ 마을행정사 상담일정: 인천지방행정사회 / 각 군구청 담당 부서

※ III. 군구별 마을행정사 안내 참조

|| 목 차 ||

I.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개요	7
1. 마을행정사 제도의 정의와 목적	9
2. 마을행정사 역할	9
3. 상담대상 및 이용방법	10
4. 마을행정사 업무 영역	10
 II. 분야별 마을행정사 상담 사례	13
1. 부동산 및 임대차 관련 민원	15
2. 수급자격 등 생활지원 민원	34
3. 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지원	46
4. 외국인 VISA 등 출입국 관련 민원	54
5. 법인 단체 등 등록 관련 민원	61
6. 기타 각종 민원	67
 III. 군·구별 마을행정사 안내	79
1. 군·구별 마을행정사 안내	81
2. 군·구청별 상담 일정 안내	83

I.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개요

- 1. 마을행정사 제도의 정의와 목적 9
- 2. 마을행정사 역할 9
- 3. 상담대상 및 이용방법 10
- 4. 마을행정사 업무 영역 10



1 • 마을행정사 제도의 정의와 목적



1. 마을행정사 제도의 정의

각종 민원업무에 대해 행정업무의 전문가인 행정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행정업무 및 서류 작성 등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사업목적

행정 절차의 복잡성이 커지고, 서류 작성·인허가·행정심판 등에서 정보 격차를 겪는 시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문 자격자인 행정사의 역량을 무료 상담으로 연결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한 ① 시민·소상공인의 행정 접근성 강화, ② 복잡한 민원·인허가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 완화, ③ 행정사 지역의 공익적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2 • 마을행정사 역할



마을행정사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3. 인천광역시와 시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3 • 상담대상 및 이용방법



1. 상담대상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용방법

- 1) 비대면 상담 :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2) 마을행정사 사무소 방문 : 상담자가 방문이 용이한 마을행정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3) 군구청 상담실 방문 : 각 군구청 내 지정된 상담장소 및 일정에 따라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4) 민원인 방문 상담 :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 사업장의 실태 확인, 원본·다량의 서류 검토, 거동 불편·이동 취약 계층의 경우 상담요청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천지방행정사회, 마을행정사 사무소 연락처 및 군구별 상담 일정·장소는 "Ⅲ. 군구별 마을행정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 마을행정사 업무 영역



행정사의 업무 영역으로서 마을행정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에 대한 대리, 서류작성, 대행
- 내용증명, 진정서, 탄원서, 계약서 등 민원 행정
- 사실조사 및 확인과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 창업 관련 인허가 절차, 사업자등록, 창업 지원사업 신청 서류 등 작성 지원 등
- 자동차등록 대리 청구
- 출입국민원 신청, 서류작성 대행(VISA 업무)
- 토지보상에 관한 이의 및 재결 신청
- 부동산 등 개발 인허가
- 단체, 조합, 법인 등의 설립
- 운전면허, 영업정지 구제, 학교폭력 등 행정심판 청구
- 각종 심사 청구(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 개인정보 분쟁 조정 신청 / 환경분쟁조정 재정신청
- 소비자 피해구제 청구 및 공정거래 이의신청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청구
- 기업의 인증, 확인 등의 대리
- 번역확인 증명서 발행, 번역공증 촉탁대행(외국어행정사)
- 번역확인증명이 필요한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취득 대행 (외국어행정사)
- 해상 여객 및 해운 관련 업무(해사행정사)
- 각종 선박 운용에 따른 사건 사고 보고서(해사행정사)

그 밖에 관공서 등에서 필요한 각종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 상담과 서류 작성에 대한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Ⅱ. 분야별 마을행정사 상담 사례

1. 부동산 및 임대차 관련 민원 15
2. 수급자격 등 생활지원 민원 34
3. 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지원 46
4. 외국인 VISA 등 출입국 관련 민원 54
5. 법인 단체 등 등록 관련 민원 61
6. 기타 각종 민원 67



1 • 부동산 및 임대차 관련 민원



Q1. 1개의 필지에 다수의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한 경우, 골목을 통하여 출입하는 토지가 지목이 도로가 아닌 대지로서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경우의 재산권 행사

상담인은 198X년 건축한 주택을 매수계약 한 후, 잔금을 치루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갔으나, 등기부등본상 진입 골목길이 개인 사유지(지목: 대지)로서 맹지에 건축한 주택이므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골목길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거나 분양 당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하면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 토지주가 아닌 현재 주택 소유주들이 지목 변경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현 주택 소유주들이 토지를 매수해서 공유지분으로 한 후 공용 사용할 수 있으나 이미 분양 당시 분양가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건축법상 맹지에 건축허가는 불가하므로, 건축허가 당시 골목길은 공용도로용으로 허가를 받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분양가에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 다만, 골목길 토지에 대하여만 등기정리가 안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관할청 건축과를 방문하여 건축허가 시 골목도로 포함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 ☞ 주택 분양가에 골목길 포함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안내드리고 해당구청 건축과에 확인 및 확인서 작성을 안내드렸습니다.

Q2. 근린생활시설상가에서 고시텔로 용도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상담인은 집합건물 소유주로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상가를 고시텔로 용도변경하고 싶은데 변경 가능 여부와 변경 업무를 어디에 의뢰해야 할지를 상담요청 하셨습니다.

- 건축법상 건축물을 용도를 달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 다만, 근린생활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달리하여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사항 변경을 하거나 기재 내용 변경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재변경 사항도 용도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중생활시설인 고시텔은 예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로 근린생활시설 중 필수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이고, 면적에 따라 건축물대장 상 용도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건축, 소방, 주차, 소음 등과 관련된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확인하여 진행해야 하셔야 합니다.
- 용도변경 대행은 건축설계사 또는 행정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사의 설계도서가 필요한 경우 행정사가 대리하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가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용도변경 건은 건축 관련 전문가인 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일괄처리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편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3.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에 본인 명의가 누락되어 있는데 정정할 수 있나요?

상담인은 00구 소재 임야(약 4,700㎡)를 19XX년 매매로 전부 취득한 이후 일부 지분을 수차례에 걸쳐 제3자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를 열람한 결과, 매수인들만 공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잔여지분을 보유한 본인의 성명이 누락되어 있어 정정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해 상담 요청 하셨습니다.

-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는 등기사항을 기초로 작성되나 과거 자료 누락 또는 입력오류로 인해 실제 권리관계와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분보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건의 경우 상담인은 19XX년 전부 취득 이후 6차례에 걸쳐 매도 하였는데, 취득 지분 중 약 84%의 잔여지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공유자로 등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따라 관할 구청 토지관련 부서에 아래 자료들을 준비해서 대장 정정 민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 매매계약서 사본(보유 시)
 3. 지분계산표, 4. 사실확인서
- 또한 대장정정 심사과정에서 추가 소명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필요 시 보완자료 제출 및 추가 설명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상담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상담인이 준비한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정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작성을 지원하였습니다.

Q4.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건축 및 거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담인은 00구 소재 농지의 소유주로서 단독주택 건축, 농촌체류형쉼터 또는 농막 설치 및 전입신고 후 거주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허용되는 개발행위 외에 단독주택 건축은 불가합니다.
- 농촌체류형쉼터 설치에 농지법상 허용규정이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설치에 쉽지 않고, 해당 구청에서는 불허가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 농막설치는 가능하나 해당 구청의 경우 간이화장실 설치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입신고의 경우 농막은 농업용 창고 개념이라 불가하고,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는 가능할 수 있으나 최장 30일 일시 거주만 가능하여 농지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려드립니다.

Q5. 구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자금조달)> 요청을 받았는데 작성방법과 소명자료 제출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상담인은 인천 소재 분양 아파트를 중도 매수하였고 부동산 거래 후 해당 구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으며, 최근 ○○구청 토지관리 팀으로부터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실시에 따른 자료제출(자금조달)> 요청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후 소명서(자금조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동산 거래내역을 검토하던 중 자금조달 등에 의문점이 생기는 경우, 거래의 적정성이나 자금출처, 거래 경위 등을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구청에서 보내준 소명서 양식에 따라 소명인, 부동산표시, 부동산 신고금액 및 실거래금액, 공인중개사 중개 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거래한 것인지를 작성하고, <소명의견>에는 해당 부동산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정확히 작성하고, 부동산거래내역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일자와 거래금액, 거래방법을 적고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들어간 <매수자금 조성내역>은 부동산거래신고필증에 나와 있는 신고금액에 대하여 1.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 주식매도금액, 현금잔액, 전세계약 보증금 등)을 기록하고, 2. 타인자금(대출금, 차용금 등)을 매수자금의 조성일자, 금액, 영수방법, 증빙자료(거래내역, 차용증 등)를 순서대로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에서 소명서 및 소명의견(부동산거래내역/자금출처 소명)에 대한 작성예문을 보여주고 ○○구청에서 보내준 소명양식에 맞추어 순서대로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일자와 순서대로 첨부하여 공문에 나와 있는 제출기일까지 직접 구청 토지정보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이메일로도 제출할 수 있음을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 상담인은 갑작스럽게 소명서를 받아 당황하였는데 소명서 양식 작성 방법과 첨부증빙서류, 작성 예문, 제출방법 등을 안내하여 제출기일까지 무사히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Q6. 임차 중인 아파트에서 녹물이 계속 발생하는데,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을 이유로 조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담인은 아파트 전세로 거주중인 임차인으로 202X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주방 싱크대와 욕실 세면대에서 심각한 녹물이 발생하여 집주인에게 현 상황을 공유하고 전문 업체의 공사 견적(약 200만원)을 전달하며 수선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고액의 수리비 부담을 이유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담인은 식수 사용은 물론 세면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반복되는 요청에도 묵묵부답인 임대인의 태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물적 피해를 호소하며 실질적인 행정적·법률적 대응 방안을 상담 요청하였습니다.

- 임대차 목적물의 노후 배관 교체는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 의거하여 '대규모 수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단순히 법적 의무만 강조하기보다 행정기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첫째, 행정기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노후 주택(아파트, 단독, 다가구 등) 지원사업을 확인하여 공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관할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자부담을 줄여 수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수선 의무 미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 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민법상 임차인의 권리(계약 해지 등)를 명시한 객관적 사실관계 위주의 내용증명을 우선 송부하신 후 강경한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수도 사용이 불편하신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빠른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
- ☞ 상담인의 사업장으로 방문하여 의뢰인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경청하고, 단순한 행정법률 지식 전달을 넘어 실질적인 '출구 전략'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특히, 상수도 사업본부의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임대인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고, 임대차 계약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감정적 대립보다는 행정적 지원책과 연계한 상생적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Q7.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절차 및 준비 서류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상담인은 일반음식점(약 180m²)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영업시설 중 일부를 단란주점으로 용도변경하기를 위해 이에 대한 용도변경 절차 및 준비 서류 등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건축법상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단란주점은 면적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 또는 위락시설에 해당합니다. 단란주점은 '위락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더라도 시설 기준과 주변 환경(학교보건법 등)에 따른 제약이 까다롭습니다.
- 검토하셔야 할 주요 사항과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전 확인사항

- ▷ 건축물 용도 확인: 단란주점으로 사용하려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²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150m² 이상이면 '위락시설'로 분류됩니다. 현재 전체 면적이 150m²이상이므로, 일부만 분리하여 150m² 미만으로 구성한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가능합니다.
-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해당 건물 반경 200m 이내에 학교가 있을 경우, 교육지원청의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마찬가지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정화조 용량: 일반음식점보다 단란주점의 오수발생량 산정 기준이 높을 수 있으므로, 건물 전체 정화조 용량이 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시설 분리기준

단란주점과 일반음식점을 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려면 완벽한 구획이 필요합니다.

- ▷ 독립된 공간: 벽이나 층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며, 고객이 내부에서 서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 ▷ 별도의 출입구: 각각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진행 절차

▷ 건축물 용도변경 (필요 시)

현재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150m² 미만이면 같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군 내에서의 변경 가능 합니다.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필요)

단란주점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므로, 면적과 상관없이 강화된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비상구, 방염처리 등)을 갖추고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영업신고 변경 및 허가

단란주점은 일반음식점(신고제)과 달리 '**'허가제'**입니다.

※준비서류: 영업허가신청서, 소방완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교육이수증 등

- 먼저 기존 일반음식점 일부를 분리하여 단란주점으로 사용할 것인지, 일반음식점은 폐업하고 용도변경을 통해 단란주점 영업 허가를 득할 것인지를 결정 하신 후 관할 구청 위생과에 해당 지번을 알려주고 "학교정화구역 저축 여부"와 "현재 건물 상태에서 단란주점 허가가 가능한지"를 유선으로 1차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영업 허가는 엄격한 구비설비 요건과 용도에 따른 행정제약이 많은 만큼 충분한 사전 협의와 제출서류를 준비하시어 상담인님이 원하시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Q8. 법원에 제출할 부동산 시세확인서 관련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상담인은 법원에 제출할 00구 00동 소재 부동산의 시세확인서와 관련하여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및 작성 방법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원에 제출하는 부동산 시세자료는 재산분할·손해배상·집행 등 소송절차에서 시가(실거래가 또는 감정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반드시 공적 감정서가 아니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시세확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시세 확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한 최근 거래사례 확인
 2. 한국부동산원 시세정보를 통한 시세 참고
 3. 동일지역 내 유사 물건 거래사례를 반영한 시세추정서 작성
 - 보다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현장 부동산 중개업소 2~3곳 이상 전화 또는 방문 확인
 2. 동일단지 또는 유사면적·유사조건 거래사례 확인
 3. 확인내용을 기초로 공적 자료를 정리하여 참고자료 제출
 - 해당 시세확인 자료는 법원의 재산분할 및 소송절차에서 보조자료로 제출 가능하며, 필요 시 감정평가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 상담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상담인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시세확인서 및 사실확인증명서 작성 방향과 첨부자료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Q9. 농지에 성토 작업을 의뢰하였으나 성토업자가 임의로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상담인은 구두 계약상 성토업자에게 법적 한도인 50cm만 높여 달라고 했는데 임의로 2m를 성토하여 그 결과 성토업자는 개발제한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1. 구청이 성토업자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내릴 수 있는지, 2. 성토업자를 폐기물 불법처리한 내용으로 남동구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3. 공무원이 현장실사와 토지성분 등을 확인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 요청 하셨습니다.

- 「개발제한법구역법」상 시정명령은 위반을 한 “해당행위자”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행위자”란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서 성토업자 뿐만 아니라 소유자도 해당이 됩니다.
- 따라서 실제 위반행위를 한 성토업자에게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인지는 행정청이 결정할 것이나 성토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결국은 소유주 책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폐기물이 다량으로 섞인 흙을 고의로 투기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반할 정도의 위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성토업자가 검찰로부터 불법 성토한 혐의로 벌금이 부과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법원에 원상복구 명령을 청구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소유주가 법적 허용 범위까지 원상태로 이행한 후 성토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할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10. 임대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차인에게 빌려준 식당의 임차료를 받고 싶습니다.

상담인은 몇 년 전 식당 건물을 임대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전차인에게 소정의 월 임차료를 받기로 하고 정상적으로 임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차인은 두세 차례의 임차료만 지급 후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인 구두 요구에도 계속 불응하고 있습니다.

- 상담인과 식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전차인 사이에 구두 계약만 있고 서면으로 된 계약서가 없으며, 수년간 임차료 지급을 구두로만 요청하는 등 상담인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정해 보이나,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어 임차료 지급을 독촉하는 행위는 나름대로 법률상 의미가 있습니다.
- 내용증명은 발신인과 수신인의 인적 사항 및 수신인에 대한 통지 내용을 기재한 다음, 발신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날인된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우체국에 가지고 가시면, 우체국은 소정의 요금을 받은 후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 형태로 보내고, 사본은 우체국과 발신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 또한 분쟁이 심화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상담인에게 내용증명을 작성해 주는 일은 통상적인 마을행정사의 서류작성 역할보다 심층적인 내용이나, 상담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가 없이 내용증명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Q11. 구거점용허가를 받고 싶습니다. 토지 진출입을 위해 구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구거는 법적으로 농업용배수로, 소하천, 농업기반시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마음대로 통로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 점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정비법"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거는 배수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공공시설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구를 내면 원상복구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거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구거를 횡단해 출입구를 만들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청 확인: 시·군청 건설과, 농정과와 한국농어촌공사 확인
 2. 구거 점용 허가 신청
 - 점용 목적을 "진출입로 설치"로 기재하고 도면 첨부
 - "농어촌정비법" 또는 "하천법"에 따라 심사
 3. 구조물 설치 기준 충족
 - 배수 기능 유지
 - 차량출입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박스관, 교량구조물 설치
 4. 허가 후 시공: 반드시 허가를 받은 수 공사 시행
- 자세한 구체적 절차와 서류는 정부24 민원서비스에서 "점용허가"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구거는 공공시설로 반드시 구거 점용허가를 받아야 통행로 설치가 가능하니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제출서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Q12. 토지(지목-전)를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인은 토지(전, 약 400m²)를 매입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법원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니 해당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 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재지 면사무소는 해당 토지(전)에 허가받지 않은 농가주택(구옥)이 존재하므로 농취증을 발급할 수 없고 농지전용(전→대지)을 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매매 계약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해당 토지(전)에는 195X년과 196X년에 농가주택이 지어졌고 현재 잔존중입니다.
- 해당 농가주택은 1973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농지법상의 농지가 아니고 과거 농지개혁법 때의 농지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소유권이전 등기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통지서」에 “1973. 1. 1.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부터 건물이 존재(건축물대장상 195X년)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등기신청이 가능함”으로 반려통지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면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 또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1981. 3. 1. 이전에 건축물이 있었다면 지목을 대지로 변경 시에도 「농지전용부담금」이 감면됨을 알려드립니다.

Q13. 민간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를 받았는데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담인은 201X년 구입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대학원 재학 중으로 경제적 납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관련 법령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과태료) 제1항 제2호로, 임대 의무기간 중 허가 없이 임대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해당 지자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때,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구체적 사유와 입증자료를 첨부하고, 대학원 재학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담아 과태료 감경 및 분할납부를 함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서에는 위반 고지(우편등기) 수령 경위, 위반 인지 시점, 경제적 상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순서대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출력하여 전달하고, 과태료 감경 및 분할납부 신청을 위한 의견제출서 작성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Q14. 오피스텔 세입자가 17개월치 월세를 미납한 채 연락두절입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주택(오피스텔)임대차 계약에 근거하여 전입한 세입자(임차인)가 월세를 미납한 상태로 연락두절인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짐을 반출하거나, 청소 후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 우선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하루 빨리 임차인을 찾거나, 가족, 주변 지인을 찾아 연락이 닿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그럼에도 끝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우선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아울러 체납된 임대료, 시설손괴, 청소비 등 손해액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손해배상(민사)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
- 다시 말씀 드리지만 최우선의 조치는 비용이 들더라도 법원에 명도소송을 가장먼저 제기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방법이니 법무사, 변호사 등을 통하여 향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 어려움이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15. 불법 무허가 가설건축물 철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상담인 소유 주택에 친동생이 전입신고 없이 무단 입주하여 허가 없이 임의로 불법 가설건축물을 지어 거주하고 있어 다섯 차례에 걸쳐 퇴거 및 철거 요청을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상담요청 하셨습니다.

- 우선, 사실 확인과 증거 확보를 위해 아래 사항을 준비합니다.
 1. 토지등기부등본, 2. 지적도 / 토지대장
 3. 가설건축물 사진 및 설치 상태, 4. 설치 시기 및 확인 자료
 5. 설치 대상인 확인
-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소송을 대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내용 증명에 포함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 토지라는 사실, 2. 무단 설치 사실
 3. 일정기간 내 철거 요구 (통상 7~14일)
 4. 미이행 시 법적 조치
- 철거 미이행 시 행정기관에 불법건축물 철거 신고 및 요청을 진행 합니다. 불법건축물로 판명되면 불법 구조물의 소유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경제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 최후 수단으로 각종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형제간에 일어난 사안이니 만큼 형제간 싸움은 가급적 피하시고 원만히 합의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Q16. 임차인이 오랫동안 사업을 폐업한 상태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직권 폐업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직권 폐업(말소)은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세무서가 사업자의 신고 없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 하는 절차로, 임대인이 직접 직권 폐업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세무서는 신중한 실태 조사를 거쳐 아래와 같은 경우 직권 폐업을 진행합니다.
 1. 사업자가 실제로 영업을 중단했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폐업)
 2.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3. 사업장의 소재지가 불명
 4. 둘 이상의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무실적·사실상 폐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5. 장기간 세금 체납으로 정상적 사업 영위가 어렵다고 보는 경우
- 다만, 임차인이 실제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명의만 유지하고 있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장증거 수집 : 사업장이 폐쇄된 사진, 우편물이 쌓여 있는 모습의 사진을 촬영합니다.
 2. 관할 세무서에 진정 : 관할 세무서 민원실 또는 조사과에 사업자 등록 직권 폐업 요청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사업자가 부가

가치세법 제8조 제6항에 의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므로 등록말소를 요청한다는 취지로 작성합니다.

3. 인허가 업종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며, 관할구청 해당부서에 직권말소를 요청합니다.

- 민원인의 상황으로 볼 때,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대한법률구조공단(www.hldcc.or.kr) 주택·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여 심사를 받고 조정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2 • 수급자격 등 생활지원 민원



Q1. 후천적 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준비하고 신청해야 하나요?

과거 사고로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된 30대 후천적 장애인이 사회·경제적 활동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필요하나, 부양의무자(친자매·언니)가 있어 신청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 관련 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부양능력 등)로,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양포기각서 작성 시에는 부모 이혼 경위, 사고 경위서, 부양의무자 본인 가정의 생계 사유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부양 포기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는 후천적 사고로 인한 뇌병변 장애 발생 경위와 경제활동 불가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관련 장애 진단서 및 의료기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조항을 출력하여 전달하고, 부양포기각서 작성 방법 및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Q2. 미성년 자녀의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인등록신청 결과 “장애 미해당” 심사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상담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재학 중으로 3세 때부터 병원에서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후 증상 악화로 재진단 결과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상담인은 자녀의 지속적인 치료와 사회적응을 위해 국민연금 공단에 지적장애인 신청을 하였으나, “장애미해당” 심사결과 통보를 받고 이의 신청을 문의하였습니다.

- 이의신청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상담인이 원하시는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1. 최초진단에 의한 진료일지, 2. 새로운 병원의 최종 진단서, 3. 부모소견서, 4. 학교선생님의 의견서 등 추가적인 자료를 첨부하시기를 권해드렸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의 이의신청심사는 객관성 강화를 위해서 1차 심사에 참여했던 자문의가 배제되고 새로운 의사, 심리상담사 등으로 자문 회의를 구성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 결과 장애결정이 나오지 않아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상담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상담인이 추가로 준비하신 병원진단서, 부모소견서, 교사의견서 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Q3. 과거 군 복무 중 상해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정을 받고 싶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인은 199X년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었으나, 201X년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어 보훈대상자 지정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지속되어 재도전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으로, 공상처리(공무상병인증서)를 받은 건이라면 국가보훈부에 보훈대상자 지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과거 행정심판이 기각되었더라도 새로운 증빙자료(복무기록, 공무상병인증서, 간호장교 일지, 병원진단서 등)를 보완하여 국가보훈부에 재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상 미온적 처리가 확인된다면 국가보훈부 감사실에 진정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보훈대상자 지정이 불가 처분될 경우, 행정심판 기각 결정문과 감사실 진정서 내용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심판법 제47조 제1항(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청구된 처분 이외의 사항은 심리되지 않으므로, 소송 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상담인이 10여 년간 준비한 서류 일체를 직접 검토하고,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재신청 절차 및 감사실 진정서 작성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Q4. 부모님 이혼으로 어머니, 언니가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저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수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
되지 않을지 궁금 합니다.**

- 이혼 가정의 경우 부모나 성인이 된 동거 가족이 기초생활 수급자일 경우 자녀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기초생활 수급비를 지급받는 조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료지원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을 하기위해 어머니에 대한 부양의무를 포기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교류 없음 등 단순한 사유로는 부양의무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 부모님 이혼으로 각자 생활을 한다고 해도 자녀 중에 사업자가 있으면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각종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니, 개인 창업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 어머니(동거가족 포함)의 연령이 높아 질수록 의료복지 혜택을 받는 횟수가 늘어날 텐데, 개인 사업을 시작하여 많은 수익을 창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여 기초생활 수급비 및 각종 의료혜택을 꾸준히 받는게 나을지는 상담인 스스로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Q5.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영구임대아파트 청약신청을 하면 계속 탈락되는데 당첨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70대 후반 상담인은 슬하에 자녀들이 있지만 멀리 살고 있으며, 어려운 생활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협소하고 노후된 단독주택 방 한 칸을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에 영구 임대아파트를 신청하는데 계속 낙첨되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주택청약통장 개설 시 문제가 되지 않을지, 어떻게 해야 당첨 확률이 높을지 문의하셨습니다.

- 영구임대주택 청약은 그냥 무작위로 신청하는 것 보다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신청하는 것이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가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기초생활 등급이나 수급비 수령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할 수도 있지만, 청약통장을 개설하되 아주 적은 금액으로 통장을 개설하면 기초생활 수급비 수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아주 최소의 금액으로 청약통장을 개설하여 신청을 하게 되면, 상담인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1순위로 당첨될 확률이 높으니 꼭 청약통장을 아주 적은 금액으로 개설하시고 차후 영구임대 분양공고가 게시되면 바로 청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Q6. 부친의 교통신호 위반 사고로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통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부친이 오토바이 배달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받았으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통지를 받았습니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의신청 및 분할납부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이며, 부당이득금 반환에 억울한 사항이 있다면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및 현장 조사자료를 확인하여 과실 여부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사고 경위, 과실 여부, 억울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이득금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4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니, 공단에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 자료를 출력하여 전달하고, 이의신청서 초안 작성 요령을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Q7. 한인구조단(00지사)에서 ○○구청에 취약계층의 기초수급자 등록 관련하여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한국인 김○○씨는 국내에서 화물차운송업(개인)을 하다가 화물차량 사고로 뇌손상을 입고 부인의 국적인 베트남으로 가서 생활하다가 해외에서 편마비 증세로 쓰러지게 되었으며, 이에 한인구조단이 해외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김 씨를 국내로 송환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구청에 기초수급자 등록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기초수급자 등록을 하려면 1. 소득기준, 2. 재산기준, 3. 부양의무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생계급여 30%, 의료급여는 40% 이하여야 합니다.
- 한인구조단이 김 씨를 기초수급자 등록을 하기 위해 화물차운송업 사업자등록을 폐업 지원하였으나, 소유했던 화물차량이 ○○캐피탈에서 5,000여 만원 채권가액 및 세금미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어 말소가 되지 않아 재산가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 기초수급자 등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먼저 기초수급대상자로 등록을 하려면 해당자의 개인파산을 통하여 폐차장에 있는 김 씨 소유의 화물차량을 채권자인 ○○캐피탈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면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인구조단을 지원하는 변호사·법무사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니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진행하고 기초수급자 등록을 진행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Q8. 의료급여 수급자의 재신고 여부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수급내역서 통지서에 관한 문의

- 건강보험 의료수급자로 수급자격을 받게 되면 과거에는 매년 의료급여증을 갱신(재발급)하여야 하나,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매년 수급자가 정기적으로 재신고하거나 갱신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 다만, 소득·재산·가구원수 등 자격변동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또는 수시로 소득, 재산, 가구원수 등의 변동을 전산으로 확인 조사를 실시하므로 수급자가 별도로 먼저 신고하지 않더라도 자격유지가 자동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상담인이 지참하신 <의료수급내역서>는 매년 수급자가 사용한 의료급여 일수가 연간 300일 이상이 되는 수급자 등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이용 내역과 남은 일수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자료이며, 내용을 보니 아직 수급일수가 남아있고 연말이라 수급일수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 또한 건강보험 의료수급통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9. 모친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자녀 소득 초과로 미지정되었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모친은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나, 자녀(큰아들·둘째아들)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거부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큰아들은 연 수입 대비 실수령액이 거의 없고, 둘째아들은 장애인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하여 상담요청 하셨습니다.

- 관련 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를 입증하는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 큰아들은 실질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자료를 준비하시고, 둘째아들은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한 장애등급 판정 자료 및 경제활동 불가 사실을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자료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된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조항과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자료를 출력하여 전달하고, 부양의무자별 제출 서류 목록 및 재신청 방법을 안내 드렸습니다.

Q10. 보훈 관련 신청을 직접 했으나 부결되었는데, 행정사에게 의뢰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상담인은 보훈 관련 신청을 본인이 직접 진행하였으나 부결 통보를 받은 상태로, 행정사에게 의뢰할 경우 재신청 가능 여부 및 향후 절차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보훈 관련 신청이 부결된 경우라도 재신청은 가능하며, 다만 동일 자료만으로는 결과 변경 가능성이 낮아 새로운 입증자료 확보 여부가 중요합니다.
- 기존 부결사유를 중심으로 사건 구조의 재검토와 다음과 같은 보완 가능 자료 여부의 중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신규 의무기록 및 진료기록, 2. 군 복무 관련 기록자료
 3. 사실확인 공문 회신 및 제3자 확인자료 등
- 또한 사건 성격에 따라 재신청 또는 이의신청 중 유리한 절차를 선택해야 하며, 필요 시 행정심판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 재신청 준비 시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체크하여야 합니다.
 1. 반려·비해당 사유 분석표 작성, 2. 신규 증거 확보 및 정리
 3. 사실관계 일치: 날짜·장소·진료 및 복무기록 간 정합성 확보
 4. 절차 선택 전략 수립: 재신청 vs 이의신청·행정심판 중 유리한 트랙 결정(병행 전략 가능)
- ☞ 상담인을 방문하여 현재 보유자료를 검토하고 향후 진행전략과 준비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Q11.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가족급여(중증장애인) 가산수당이 오류 지급되었다고 반환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인은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관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녀가 중증장애인으로 몇 년간 가족 돌봄을 해왔는데, 소속 복지관으로부터 가족급여 가산수당이 2년간 600여 만원이 오류 지급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즉시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 이미 지급시점이 2년 이상 지난 일로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지급 되어 오던 가산수당을 부정수급이 아님에도 갑자기 해당 구청에서 무조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상담인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부당지급급여의 징수) 제②항 및 제③항(잘못 지급된 경우)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안내」 규정의 (가산수당 지원제외대상 - 가족에 의해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되는 경우)와 「공공재정환수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 상 착오로 인한 가족급여 가산수당이 지급된 경우 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다만, 상담인의 과오나 부정으로 가산수당을 수급한 것이 아니고 행정상의 착오(사회보장정보원)로 지급된 것으로, 수급인의 귀책 사유나 부정수급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가산수당 반환 일정에 대해 상담인의 의견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의 제①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는 상담인 반환액에 대해 이자환수액은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해당 복지관과 충분히 협의하셔서 납득하실 수 있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 마을행정사는 관련법령과 사례에 대해 안내드린 후 상담인의 현재 상황과 재정적 부담을 이해하고 해당 복지관에 상담내용과 상담인의 의견 및 행정사의 종합의견을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복지관에서는 상담인인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지관에서 해당 구청에 오류로 지급된 가산수당을 먼저 반환하고 상담인에게는 1년간 이자없이 분할하여 반환하기로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3 • 소상공인 · 중소기업 관련 지원



Q1. 청년창업자로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대기배출설치신고」와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먼저 신고해야만 한다는데 무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인은 청년창업자로 「커피원두 로스팅 사업」을 창업하기로 하고, ○○동 지식산업센터 1칸(30평 정도)을 임대하였고 원두커피 로스팅 기계와 포장기 등을 설치하고 ○○구청 식품위생과에 「식품제조가공업」영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식품제조가공 공장의 경우 환경과를 경유하여 ①대기배출 설치신고, ②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완료해야만 식품가공업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식품위생과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 구청 위생부서에서 환경부서를 경유하여 신고할 것을 안내받으셨을 때 사업장에 설치한 원두커피 로스팅기가 소음진동 및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허용기준치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초과된다면 방지시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생각하지 못했던 창업의 장벽에 부딪혀 설치한 제조시설을 가동하지도 못하고 고민이 많으셨을 듯 합니다.
- 우선, 특정 기준 이상의 동력을 가진 기계를 공장에서 가동할 때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또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라 대상지역 별 소음·진동 배출 허용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기준을 달리합니다.

- 또한, 2020년 1월 1일 이후 법령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용 범위가 확대 되어 커피 로스팅 사업의 경우 '입자상물질 배출 시설(코코아·커피 가공시설)'에 해당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배출시설의 규모(중량, 면적, 용적, 열량, 동력) 등으로 대기배출시설의 적용(허용)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하여 해당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시고 사업장에 설치된 커피 로스팅 기계와 포장기계 등 시설의 규모를 설비사업자에게 요청하셔서 허용기준이 두 개 법령에 적용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인과 해당 구청의 환경과를 동행 방문하여 관련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치와 사업장의 대상지역, 설비규모 등 실질 현황을 비교하여 설명하였고, 결론적으로 해당 사업장은 환경과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임을 상호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환경과의 경유를 거쳐 식품위생과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식품가공업 영업신고서>를 바로 발부받아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식품가공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Q2. 칫솔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칫솔제조업(구강용품제조업)이 언제부터 공산품에서 위생용품으로 분류되어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마을행정사는 해당 구청 위생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상담인과 함께 민원에 대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위생담당 부서도 아직 보건복지부로부터 정확한 규정이 하달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여 해당 사업장에 정확히 설명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 이후 위생담당 부서에서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위생용품관리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구강관리용품인 칫솔, 치실, 설타제거기 등은 오는 2025. 6. 14.이후 제조된 품목부터 위생용품 관리법령의 적용을 받게 됨을 해당 사업장에게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업체에서 걱정하는 2025. 6. 14. 이전에 생산된 칫솔 등 기존 생산품(재고)은 위생용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항도 전달되었습니다.
- 이 위생용품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 위생용품제조업은 제조업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영업신고 후에도 자가 품질검사, 위생교육 이수, 생산실적 보고, 표시기재 의무 등 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이 많다보니 기존 공산품 때와는 달리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된다는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신청서류를 구청에서 해당사업장에 직접 보내주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Q3. 근로자파견업 설립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 근로자파견업 설립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또는 법인일 때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자본금 증빙서류
 2.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3. 사업계획서, 4. 사무실배치도 및 약도, 조직도
 5.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조건: 2종근생, 업무시설)
 6. 사업자등록증, 7.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8. 종사자 명부 및 4대보험 가입증명원
- 지방고용노동관청에 위에 안내드린 서류를 제출하고 현장실사 후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신규 허가 이후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서류도 사전에 준비하셔서 향후 운영 중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 근로자파견사업 신규 허가 신청서 양식과 준비서류 등을 다운받아 안내해 드리고 추가적인 궁금한 내용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Q4.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 변경신고 절차 및 준비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건물외부영업” 신고는 2021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신고를 완료해야 적법한 영업이 가능합니다.
- 관계 법령 및 소관청 가이드라인에 따른 주요 내용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계법령 및 기본원칙

- ▷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영업신고 사항의 변경)
- ▷ 영업 가능 장소: 영업장(내부)과 직접 맞닿아 있는(연접한) 외부장소 여야 합니다. (예: 1층 테라스, 건물 내부 광장 등)
- ▷ 제한 사항: 도로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 타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인도나 도로는 점용 허가가 없으면 불가능하며, 건축물 대장상 무단증축물인 곳에서도 신고가 불가합니다.

2. 신고 절차

- ▷ 사전 확인: 관할 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를 통해 해당 장소의 건축법·도로법상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 서류 접수: 관할 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 방문 및 접수
- ▷ 검토 및 처리: 서류 심사 후 결격 사유가 없으면 변경된 영업신고증이 발급됩니다.
- ▷ 사후 점검: 신고 후 구청에서 현장 점검을 나와 실제 신고 면적과 시설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구청 비치(인터넷 출력 가능)
 - ▷ 기존 영업신고증 원본
 - ▷ 옥외영업장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옥외 공간 사용 내용 포함)
 - 집합건물인 경우: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 (전용부분 확인용)
 - ▷ 배치도 및 평면도
 - 건축물현황도 중 배치도: 대지 안의 외부 공간 위치 표시
 - 영업장 평면도: 실내와 옥외의 연결성 및 각 면적(m²)을 표시
 - ▷ 옥외영업 시설 사진: 현재 옥외 공간 상태 확인용
 - ▷ 기타: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 옥외영업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집합건물의 경우 입주자의 상반된 이해관계로 전용부분 확인을 받기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해당 집합건물 관리규약 내용을 확인하시고, 주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설득도 필요합니다.
- 옥외영업장에는 고정 시설물(벽, 기둥, 지붕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동이 용이한 파라솔, 테이블, 의자 정도만 허용됩니다. 또한 상업 지구가 주거지와 인접한 경우가 많아 야간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영업시간 제한 등 행정 지도가 따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없이 옥외 영업 및 고정시설물 설치 시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시설물 철거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 하시고 제출서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Q5. 여성기업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여성기업 인증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한국여성경제인 협회가 운영하는 제도로써, 여성 대표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임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확인서 발급 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입찰 가점, 정책자금 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 대표자가 여성(실제 경영자도 여성)
 2.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 여성, 여성 지분 50% 이상, 여성 대표가 경영
-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입력 후 출력, 서명 날인하여 업로드)
 2.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수)
 3. 신청기업현황서, 4.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5. 면담확인서
-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2. 제출서류 업로드 및 여성기업 확인 신청
 3.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4. 현장조사 결과 검토 및 확인서 발급
- 여성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이후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biz) 또는 지방중소벤처 기업청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리라 믿습니다.

Q6. 제조업을 운영하는데 내국인 고용이 쉽지 않아 생산직에 필리핀 근로자 2명을 고용하고 싶은데 그 방법과 절차는?

-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은 E-9(단순 노무직, 고용허가제)와 E-7(특정활동, 전문인력/숙련기능인력)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 E-9(비전문취업) 외국인 체류비자는 사전에 고용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이 고용노동부에 고용허가를 신청해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수를 확정 한 후에 산업인력공단이 이를 대행하여 17개국에서 한국에 취업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를 연결하여 입국/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업을 희망한다고 공장에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를 허가 없이 직접 고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으려면 1. 내국인 구인노력(1주 이상), 2.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3. 고용허가서 발급, 4. 근로계약 체결, 5.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6. 입국/취업교육, 7. 현장배치 및 관리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때도 특정 외국인을 지정하여 알선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E-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은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점수제 숙련기능인력으로 나누어 고용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과 준전문인력은 외국인의 자격요건과 고용업체의 자격요건이 모두 일치하여야 사증발급이 가능하고, E-7-4점수제 숙련기능인력은 E-9으로 국내에 정상적으로 입국하여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어능력과 일정 급여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고용주의 추천 등으로 점수제(300점 중 200점 이상)이 되어야 E-7-4로 변경하여 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

4 • 외국인 VISA 등 출입국 관련 민원



Q1.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외국인 친구의 한국체류비자를 상담 받고 싶습니다.

외국인 친구는 어려서부터 무역업을 하는 부친(D-9)을 따라 동반비자로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으며,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에 대하여 상담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D-8-4S)」는 2024년 12월부터 시작된 유망한 글로벌 창업인재 및 해외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유치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추천 및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하는 새로운 방식의 기술창업비자입니다.
- 상담인과 외국인 친구는 함께 중고자동차 수출플랫폼을 개발하여 각종 청년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하여 2회나 수상한 경력을 고려할 때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D-8-4S)」를 추천드립니다.
- 신청자격은 외국인이 (예비)창업기업의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 외국인을 대표자로 사업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의 「K스타트업포털」에 제출하여 민간평가위원회의 심사·평가를 받아 사업성·혁신성이 인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추천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지표로는 1. 문제인식, 2. 실현가능성 및 차별성, 3. 성장전략, 4. 팀구성, 5. 한국시장 진출가능성으로 평가하며 신청 후 평가 시에 사업발표 및 Q&A가 진행되게 됩니다.

- 외국인 친구는 중고자동차 수출플랫폼 사업계획을 「K스타트업 포털」에 신청하고 심사·평가를 거쳐 사업성/혁신성이 인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추천서(유효기간 6개월)를 받게 되셨으니, 추천서를 첨부하여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D-8-4S)」를 신청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2. 영주자격(F-5) 비자 변경 조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상담인은 외국국적동포로서 현재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로 국내 3년 이상 체류 및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담인은 소득 등 필수 조건과 영주자격 변경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 정부는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국내 취업 및 체류활동이 자유로운 영주자격(F-5)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주자격 부여 기본요건은 다음 3가지입니다
 1.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 소득 주체: 신청인,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 중 소득 산정기간 기산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단,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함
 - ▷ 소득 산정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1년
 - ▷ 소득에 대한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 연간소득 심사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 ▷ 인정되는 자산의 종류: 금융자산, 실물자산
 - ▷ 자산에 대한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 등
 - 2.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 ▷ 기본소양 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한 사람,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득점한 사람
 - 3.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이 단정할 것
- 영주자격 기본요건을 토대로 상담인의 현 상황을 파악한 후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류기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2. 소득요건: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4,995.5만원이나 상담인의 소득은 3천만 여 원으로 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3. 기본소양: 재외동포 2년 이상 자격 소지자는 면제 대상입니다.
 4.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여부: 추후 해외범죄 경력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결론적으로 상담인 본인의 소득만으로는 영주자격 변경 기본요건에 미흡하므로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와 2025년분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발급이 가능한 소득금액증명서 상 소득을 확인한 후에 추가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 영주자격을 포함한 비자 관련 문제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제출서류 또한 복잡한 만큼 행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 준비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Q3. 코로나 사태로 입국하지 못하여 한국 영주권을 상실한 재 국외 체류 중인데 한국 장기체류비자를 받고 싶습니다.

상담인은 대만 여권 소지 화교인 사위가 한국 대기업 현지 직원으로 한국 국적자인 딸 및 손녀와 함께 중국 북경에 체류하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제때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하여 한국 영주권을 상실하였는바, 한국 장기체류비자를 한국 입국 후 짧은 기간내 취득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중국 지역에 있는 대부분 재외공관은 한국 비자 접수 및 비자 발급 후 여권 배포를 별도 기관인 비자신청센터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한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이 아닌 비자 신청센터(전화번호 : +86-400-8133-666)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 다만, 비자신청센터에서 한국 비자 접수 및 여권 배포를 처리하고 있으나, 실제 접수된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사증을 발급하는 업무는 여전히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상담인 사위의 경우, 한국 국적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으므로, 한국 결혼비자(F-6)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중국 북경에서 결혼비자 단수를 발급받은 후 한국으로 입국하여 소재지 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것이 국내 체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며 신속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비자 유형별 신청서류는 같은 비자 종류이더라도 중국 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지역 비자신청센터에 문의하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Q4. 선천적 이중국적자(한국·일본) 여성입니다. 이중국적자로서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문제는 「국적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 제1항)
- 이중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려면,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두 개의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받고 행동하겠습니다.”라는 서약입니다.
- 신고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
 -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통한 사전 방문 예약 및 본인 방문 필수
 2. 신고기한: 여성의 경우 만 22세 생일 전날까지
 3. 신고방법: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제출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후에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자임을 주장할 수 없으며, 한국 입·출국 시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법령 적용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국적법」 제12조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만 22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에 여유를 갖고 출입국관서에 방문 예약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Q5. 베트남에서 한국인과 결혼했다가 자녀를 낳고 이혼한 베트남 여성의 F-6-2(자녀양육) 체류자격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상담인은 외국인 여성(국적, 베트남)으로 베트남에서 한국인을 만나 정상적으로 혼인하였고 현지에서 자녀도 낳아 양육하였으나 남편의 유책으로 해외에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하여야 하고 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하고자 하나,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 국내 체류에 문제가 없지만, 정작 친모인 외국인은 국내 장기 체류자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국적의 아이를 동반하여 단기(90일) 입국한 외국인 친모가 국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외국인이 내국인과 국제결혼하여 국민의 배우자로 결혼이민(F-6)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으로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는 F-6-1(국민의 배우자)로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결혼생활 중 혼인관계가 단절(이혼)되었으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 F-6-2(자녀양육) 체류자격, 또한 혼인상태에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에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F-6-3(혼인단절)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담외국인 여성의 경우는 특이한 점이 내국인과 국제결혼, 자녀출생은 인정되나 모두 해외에서 혼인과 출산이 이루어졌으며 해외에서 결혼생활을 하다가 해외에서 혼인단절(이혼)이 되었고 단한 번도 국민의 배우자(F-6-1)로 국내에 체류한 사유가 없어, 바로 F-6-2(자녀양육) 체류자격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례가 없어 체류자격 신청 결과는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 우선, F-6-2(자녀양육) 비자신청을 위해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해외에서 출생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이혼합의 및 자녀양육 결정서 등을 번역·공증하도록 하고 해외에서 친모의 자녀양육을 입증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수집, 그리고 국내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유치원 재학증명서, 거주·숙소제공 확인서와 행정사의 친모와 자녀의 면담 및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자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자료 작성과 수집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외국인 친모가 자녀양육권을 갖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해외에서도 계속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으며, 친모가 자녀를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올바르게 성장·양육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 ☞ 출입국·외국인청에서도 처음에는 그러한 사례(F-6-10이 없이 바로 F-6-2 비자발급)가 없어 <불허>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미성년 자녀의 인권 및 국내에서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친모의 양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도적인 결정을 내려 F-6-2(자녀양육) 체류자격 비자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외국인 여성은 이제 자녀를 대한민국 초등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었고 본인도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자녀를 떼떽하게 양육할 수 있게 되었고, 자녀를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국민으로 훌륭하게 잘 키우겠다며 행복해 하였습니다.

5 • 법인 단체 등 등록 관련 민원



Q1. 비영리민간단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등록 절차 및 혜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단체의 활동 범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 단체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익성: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비영리성: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3. 중립성: 특정 정당/후보 지지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가 주된 목적이 아닐 것
 4. 회원 수: 상시 구성원(의결권 있는 회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활동실적: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조직 형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을 것
- 등록 절차 및 기본적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절차)
 1. 서류 접수: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관할 기관(민원실 등)에 제출
 2. 요건 검토: 소관 부서에서 서류 및 등록 요건 검토
(약 20~30일 소요)
 3. 현장 조사: 실제 사무실 운영 여부 및 활동 내용 확인 등 실사
 4. 등록증 발급: 요건 충족 시 등록증 교부 및 공보 게재

(제출 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2. 회칙(정관)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
4. 당해 연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5. 회원명부(100인 이상) 1부
6.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언론 보도, 행사 사진, 인쇄물 등)

○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정지원: 정부 및 지자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참여 가능
(보조금 지원)
2. 행정지원: 단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협조 및 자문 제공
3. 조세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가능한 공익법인 신청 자격 부여
4. 우편요금 감면: 공익 목적 우편물 발송 시 일반 요금의 25% 감면
5. 공신력 확보: 등록 단체로서 대외적인 신뢰도 상승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임의단체(비법인)나 비영리법인 모두 가능하므로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대안으로 현재 운영 중인 단체(법인)의 실적 등의 보완을 거쳐 등록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조직의 안정과 지속성을 위해 회원의 회비 등 자체 수입 외에 국가 보조금 또는 기부금 모집 등이 필요한 만큼 향후 공익단체나 공익법인으로 지정 전환을 염두해 두어야 하므로 단계별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Q2. 비영리단체에서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그 설립허가 절차와 방법,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 아래 결합한 다수인의 인적단체로서 법인격이 부여되는 사단법인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으며, 목적사업 범위 내 수익활동은 가능하나 이익분배는 불가능합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절차는 1. 비영리법인 허가 주무관청을 확인(정부조직법상 소관업무 참고), 2. 인천광역시 소관부서를 확인(법인 목적사업/소관부서 결정), 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서류작성(설립허가신청서외 9종류), 4. 설립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인천광역시 민원실 / 방문·우편 등), 5. 소관부서 접수/검토(소관부서 처리기한 14일), 6. 설립허가 결정 및 허가증 발급, 7. 설립등기(허가 후 3주내 관할 등기소), 7. 관할세무서 사업신고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설립허가신청서, 법인소개서(설립취지), 법인정관, 설립발기인 명단/발기인 인감증명서,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및 취임승낙서, 회원명부, 창립총회회의록,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재산목록 및 재산출연승낙서, 사무소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사용승낙서) 등을 준비하여 주무관청(주무부서)에 제출하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법인의 목적사업과 사업 실현가능성 및 목적사업 수행능력, 재정적 기초 확립 여부 등을 판단하여 법인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마을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요?

- 마을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경제·사회·문화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일반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설립 가능합니다.
- 특히, 공익적 목적(돌봄·교육·지역서비스 등)이 중심이 되는 경우는 사회적협동조합 형태가 보다 적합할 수 있습니다.
-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기인 구성: 5인 이상, 지역주민 중심 구성
 2. 정관 작성 및 창립총회 개최
 3. 설립신고: 관할 시·도 또는 기초자치단체장
 4. 사업자등록 및 필요 시 고유번호증 신청
 5.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관계부처 인가 절차 추가
- 또한 설립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습니다.
 1. 협동조합 유형(일반/사회적) 선택 기준
 2.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방향
 3. 정관 필수 기재사항 및 작성 방법
 4. 창립총회 의사록 및 설립신고서 등 제출서류 구성
- 원활한 설립을 위해 관할 시청 및 시·도 협동조합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진행 후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4. 비영리 임의단체로 설립하고 추후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싶은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인은 동호회를 비영리 임의단체로 등록하기 위해 세무서에 신청하였으나 반려·보완 요청을 받았고, 추후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까지 염두에 두고 문의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이며, 비영리 임의단체 등록을 위해서는 회원 모집, 창립총회 개최, 정관 작성, 총회 회의록 작성, 주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및 전대차동의서, 임원 선임 등의 절차가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인증 요건 및 절차)를,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을 각각 확인하셔야 하며, 협동조합의 경우 설립 허가 이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완료해야 함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서 반려의 주요 원인은 창립총회 미개최, 정관 미비, 주사무실 계약 요건 불충족 등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완 요청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법령 자료를 출력하여 전달하고, 비영리 임의단체 승인신청서 양식 및 준비서류 작성 방법, 반려 사유별 보완 방법을 상세히 안내 드렸습니다.

Q5. 종교시설 및 노유자시설에 평생교육원 설치 가능 여부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이 궁금합니다.

- 노유자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은 법령상 같은 시설군(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 속합니다.
- 평생교육원은 교육연구시설로 같은 시설군에 속하는 노유자시설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주무부처인 교육청에 노유자 시설에서의 평생교육원 인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교육청으로부터 불가하다고 할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 또는 표시 변경이 필요하므로 구청 건축과와 상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은 사업 범위가 2개 이상 광역지자체에 걸친다면 중앙행정기관에 하나의 광역지자체 내라면 시·도에 신청합니다.
- 설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성, 2. 비영리성, 3. 일정 수의 회원 확보,
 4.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5. 기타 주무부처 추가 요건 등
-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신청서, 2. 단체 정관 또는 회칙, 3. 총회 회의록
 4. 공익활동 실적 증빙, 5. 회원 명부,
 6.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및 활동계획서 등
- 위 서류들을 잘 준비하셔서 하시는 일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6 • 기타 민원



Q1. 본인의 생년월일이 잘못되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하고 싶고, 기간과 서류준비 등의 진행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상담인은 본인의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연금지급시기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우선, 등록부의 정정 신청은 법적인 절차가 있어야 하므로 관할 가정법원의 등록부 정정허가 결정문을 받아야 됩니다.
- 기간은 대략 90일 정도 소요되며, 입증서류 준비에 따라 허가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 증빙서류 및 신청이유서는 정확하게 준비되고 작성되어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에서 무료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과 "정부24"에서 정정신청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은 법적 신분과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과 "정부24"에서 필요한 절차, 기한, 필요서류, 신청방법, 사례까지 꼼꼼히 확인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인님이 원하시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Q2.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 결정문을 받았는데, 신고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일반적으로 개명(改名)은 개인의 성명에 관한 가족관계등록 사항의 변경이지만,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과 단일성을 속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신고”라는 두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먼저 관할 법원의 개명 허가를 받으려면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가신청서에는 본인의 기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주의할 점은 왜 이름을 바꾸려 하는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는 법원을 방문하여 직접 접수할 수 있지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은 1~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법원으로부터 허가 결정문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주소지 주민 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개명허가를 받은 본인이지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합니다. 개명신고서에는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 연월일’을 기재하고, 법원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 개명의 법적 효력은 허가 결정 시점이 아니라 ‘신고’를 마쳐야 완성됩니다.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 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 보험사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은 소송에 비해 비용 부담이 적고 절차가 간편하면서도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실무상 보험사가 입원치료 보험금을 거절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 시행되어 입원의 실질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2. 입원 중 통증이 호전된 기록을 근거로 입원 전체 기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주장
 3. 입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기록이 미비하다는 주장
- 이러한 부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보험 약관 및 객관적 기록을 제시하여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분쟁조정 신청 시 준비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분쟁조정 신청서, 2. 보험증권 및 약관 사본
 3.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4. 검사결과지
 5.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6. 간호기록지, 7. 보험사의 부지급 통보서

- 금융감독원장은 신청을 받은 후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3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조정위원회는 회부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합니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받으셨더라도, 약관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조정 과정에서 판단받을 수 있으니 관련 증빙서류를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쟁점이 복잡한 경우 변호사 및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Q4.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과 처분 진행 및 결과 등이 궁금합니다.

상담인은 음주운전으로 경찰서 조사를 받았으며, 생계형 운전자라 이번 음주운전 취소가 결정된다면 대출금 상환 및 가족 생활비,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 등 경제적 영향이 너무나 커서 구제 방법과 행정처분의 진행 및 약식구형(벌금)에 대해 궁금하여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 당시 음주수치(약 0.14%)가 매우 높아 행정심판 진행 시 인용될 수 있는 확률이 낮고 가계대출과 가족들의 생계비 문제는 자가 보유 및 가족이 생업에 종사중으로 생계형이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경찰서 사건조사 방문 시 운전면허증(40일 임시면허증 발급)지참하고 본인 반성문과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를 작성해서 경찰 및 담당검사에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검찰의 벌금형(약식구형)은 음주수치에 따라 담당검사가 음주수치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결정액 및 분납여부는 검찰청에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 ☞ 상담인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정부24에서 확인한 결과 과거 신호위반으로 인천 차량접촉 사고로 대인 및 대물사고를 일으킨 사례를 확인하였고 음주운전 상황과 경찰지구대 방문 등 당시 상세한 정황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인에게 탄원서 작성 양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Q5. 이혼에 따른 부동산 명의 변경 · 차량 소유자 변경 등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남편이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이혼 및 부동산·차량 명의변경이 필요한 상황으로 복잡한 절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로, 성범죄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재판이혼 시 손해배상, 자녀 양육권·면접교섭권, 재산분할청구권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판이혼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정이혼 신청으로 진행하시고, 주택(빌라) 명의변경은 법무사를 통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차량 소유자 변경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소유권 변경신청(신청서, 신분증, 차량등록증 지참)으로 각각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 양육권은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확인하고 결정해야 하며,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민법 제843조)도 필요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법령 조항을 출력하여 전달하고, 각 절차별 담당기관(변호사 · 법무사 · 차량등록사업소)과 진행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Q6. 은행창구에서 현금인출이 되지않아 알아보니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고 합니다.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상담인은 약 10년 전 00은행 신용카드 현금인출액 미상환으로 인한 거래계좌 정지처분으로 수급비 수령 통장 내 잔액을 인출 못할 뿐더러 타 은행 계좌의 잔액도 압류되었습니다. 이에 은행 계좌를 이용 못하고 직접 대면으로 수급비를 받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은행권의 채무는 기한내 상환하지 않으면 반드시 계좌거래를 정지시키고 최후 통보 후에도 기한을 넘기면 계좌가 압류처분 됩니다.
- 2개 금융기관의 계좌를 압류해제 하실려면 반드시 해당 지점을 방문하시어 차용금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단, 차용금을 변제 하실 때 과거 신용카드로 인출했던 현금만 상환하면 되는게 아닙니다.
- 인출 시기가 10년 전이라면, 현금인출액에 대한 이자와 그에 따른 가중금을 변제 하셔야 합니다. 10년간의 이자, 가중금 등을 합하면 금액이 엄청나게 증가 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점을 방문하셔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 현재 기초생활 수급비를 매달 대면수급 하시고, 생활비를 모두 현금으로만 지출하시기에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해당 금융기관에 채무 전액을 확인 후 모두 변제 하셔야만 계좌 개설도 가능하고 현금 인출도 가능해 집니다. 그 외 달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Q7. 현재 아버지 명의 자가용을 아들에게 명의변경하려면 절차와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가족 간 차량 명의이전은 매매 또는 증여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세금 부담 및 증빙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이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 방식 결정, 2. 자동차보험 가입(이전받는 자 명의)
 3. 취득세 신고 및 납부,
 4.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e-자동차민원)
 5. 이전등록 완료 후 자동차등록증 교부
-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통서류: 자동차등록증,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매매·증여에 따라 작성), 신분증(양도인·양수인),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양수인)
 2. 매매 방식 추가서류: 매매계약서(필요 시)
 3. 증여 방식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증여 관련 확인서류
- 또한 이전등록은 통상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취득세(차량가액 기준 약 7% 내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상담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상담인의 상황에 따라 절차 및 세금 부담을 비교 설명하고, 필요 시 이전등록 서류작성 지원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Q8. 행정청의 처분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진정 또는 국가배상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상담인은 인천 소재의 5층 상가 건물의 5층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 중 5층 테라스 공간(4층 일부 지붕)에 설치한 고정식 칸막이 등을 철거명령에 따라 철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주무관은 처음에 어떠한 형태로도 설치할 수 없다고 말했으나, 이후 접이식 칸막이는 가능하다고 말하였고, 이는 법령을 오해석하여 위법하게 권리 남용한 것으로 이로 인한 매출 하락과 영업중단에 따른 손해에 대해 행정청을 상대로 청구 또는 진정을 진행하고 싶다고 상담요청 하셨습니다.

- 발코니·베란다·테라스 용어는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정의의 차이가 있습니다.
- 건축법상 주택의 발코니는 타용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상가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 상가 맨 상위 층의 베란다(테라스)는 건축법상 서비스 면적이 아닌 용적율·도시미관·안전(대피) 등을 이유로 건축이 규제된 면적으로, 고정식 칸막이 설치하는 불법 건축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당연히 철거 대상인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위법으로 보기 어렵고, 철거 이후에 고정식이 아닌 접이식 형태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뒤늦게 말한 것도 당연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영업손실이 손해배상은 그 입증 책임은 민원인 부담으로 매출 감소 등 구체적인 입증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국가배상 청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Q9. 인천시민으로서 시민보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넘어져 무릎 골절상으로 수술을 받은 상담인은 부담스러운 수술비로 인해 인천시민으로서 시민안전보험 혜택이 가능한지 상담 요청하셨습니다.

- 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상담인의 사고내용이 시민안전보험의 지원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연재해로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2.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3.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4.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5.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부상등급 받은 경우 1,500만원 한도
 6. 강도에 의한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7. 사회재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8.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연1회 한)
 9.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상담인의 사고 경우 시민안전보험 지원대상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인천시 안전상황실로 연락하셔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Q10. 대중교통(버스)이용 중 넘어져 후유장애가 생겼습니다.
인천시에서 운영중인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 시민안전보험은 별도 신청 없이 인천 시민 모두 자동적으로 가입됩니다만 보험 청구사유 발생시 민원인이 직접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금 청구서,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3.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4. 신분증 사본, 5. 통장 사본
 6. 후유장애진단서, 7. 기타 상해 입증서류
 - 사고접수, 서류안내 및 지급 절차 등의 문의가 있으신 경우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1577-5939)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 직접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 및 절차 확인과 서류 작성을 도와 상담인이 보험금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향후 상담인이 해당 손해사정인의 불성실한 태도 및 보험금 미지급 판정에 대해 불만이 있어, 이에 대한 상담과 인천시청에 탄원서를 작성 제출을 돕게 되었습니다.

Ⅲ. 군구별 마을행정사 안내

- 1. 군·구별 마을행정사 안내 81
- 2. 군·구청별 상담 일정 안내 83



1 • 군 · 구 별 마을행정사 안내



지 역	사 무 소 명	연 락 처	이 메 일	주 소
인천지방 행정사회	기쁨행정사사무소	032-865-3449	parkgues @naver.com	미추홀구 한나루로 604, 1309호
	규린행정사사무소	032-865-3449	youngjae2010 @naver.com	서해구 탁옥로73번길 1, 602호
강화군	샬롬행정사사무소	010-3357-9182	paulkye @hanmail.net	강화군 덕포길56번길 45
	동민국제 행정사사무소	010-9101-5790	bdkim93 @gmail.com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A동 3137호
	인성행정사사무소	032-223-7701	bluemb @naver.com	남동구 미래로 32, 8층
옹진군	든든행정사사무소	0507-1496-8339	dndn-attorney @naver.com	미추홀구 인하로 147
제물포구	한빛행정사사무소	010-5605-6273	v3lmc @naver.com	남동구 구월로372번길 90, 108-1502
	행정사법인 가온	1544-5629	d3152 @naver.com	서해구 염곡로 242-1 3층
영종구	행정명장 행정사사무소	032-752-6621	shinws26 @naver.com	영종구 흰바위로59번길 8, 버터플라이시티 226호
	행정사법인 정도	032-746-4302	hye9041 @gmail.com	영종구 운남안길 12, 4층
미추홀구	한결행정사사무소	032-423-5557	arbakim @naver.com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 르네상스타워 1706호
	행정사사무소 고든	010-5865-1114	jakim1114 @naver.com	부평구 충선로209번길 41
연수구	한길행정사사무소	032-464-0010	mindmaster21 @naver.com	남동구 인주대로 850 덕영빌딩 202호
	해결의신 행정사사무소	032-822-9193	lim611108 @naver.com	남동구 은청로 4-7, A동 313-1호
	낭랑행정사사무소	010-3054-1409	hannipal @naver.com	연수구 용담로 111, 6층

지 역	사 무 소 명	연 락 처	이 메 일	주 소
남동구	정인행정사사무소	032-818-3408	paiso @daum.net	연수구 벚꽃로 114, 3층305호
	유일행정사사무소	032-472-0204	kimsong55 @naver.com	남동구 인수대로850번길 15, 402호
	좋은사람 행정사사무소	010-2790-2469	sdw003 @hanmail.net	남동구 소래역로 94, 1104-1901
부평구	다올행정사사무소	032-512-8582	yubongp @naver.com	부평구 부평대로 32, 3층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070-8657-0100	Lawtaek @naver.com	계양구 오조산로45번길 12
	행정사법인 가온	1544-5629	jin8622 @naver.com	서해구 염곡로 242-1 3층
계양구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070-8657-1888	lawyeom @naver.com	계양구 오조산로45번길 12, 706호
	한국연합 행정사사무소	032-715-7227	c3002 @naver.com	계양구 계산새로71, 에이동 421호
	행정사사무소 혜음	010-9466-4649	fotte1113 @gmail.com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서해구	사람과세상 행정사사무소	032-207-7900	saramandsesang @naver.com	계양구 경명대로 1053, 2층
	삼성행정사사무소	032-257-0100	c44567 @naver.com	서해구 탁옥로73번길 1 502호
	하나행정사사무소	032-721-5114	hanalaw0114 @naver.com	검단구 서곶로 876, 3층 301호
검단구	행정사법인 가온	1544-5629	ocsba33 @naver.com	서해구 염곡로 242-1 3층
	원스탑세무 행정사사무소	032-721-4993	kictaxos @naver.com	검단구 보듬로 146, 가동 3층 305호
	예지행정사사무소	032-710-4966	ojj1000 @naver.com	검단구 매밭로130 한신더휴어반파크 1008동 904호

※ 군구별 마을행정사는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임기 만료 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 군 · 구청별 상담 일정 안내



지 역	상담장소	활동일	상담시간	문의	비고
강화군	1층 민원실	매월 2,4주차 화요일	09:00 ~ 12:00	민원지적과 032-930-3246	
옹진군				민원지적과 032-899-2162	협의중
제물포구	송림청사 종합민원실 1층	매월 3주차 수요일	13:00 ~ 16:00	총무과 032-770-6225	
영종구	3층 민원지적과	매주 수요일	14:00 ~ 16:00	민원지적과 032-760-7276	
미추홀구	1층 법률상담실	매주 화요일	13:00 ~ 16:00	민원여권과 032-880-4214	
연수구	1층 민원상담실	매월 2,4주차 목요일	13:00 ~ 16:00	민원여권과 032-749-7557	
남동구	1층 민원실	매주 수요일	13:00 ~ 16:00	총무과 032-453-2234	
부평구	1층 민원실	매주 수요일	13:00 ~ 15:00	하나로민원과 032-509-6312	
계양구	1층 법률상담실	매월 2,4주차 금요일	13:00 ~ 16:00	자치행정과 032-450-5196	
서해구	1층 미팅룸	매월 2,4주차 금요일	13:00 ~ 16:00	총무과 032-560-3024	
검단구				총무과 032-726-6246	협의중

※ 군구별 마을행정사 및 군 · 구청 사정에 따라 본 상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ll ways INCHEON